

##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11. 18.

예천군의회 의장



### 1. 제정이유

- 예천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자발적인 헌혈을 권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 헌혈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헌혈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다. 헌혈장소 지원 및 헌혈홍보·정보제공(안 제6조 ~ 안 제7조)

-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의 요청에 의한 행정적 지원
-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및 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를 통해 홍보 및

정보제공

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 가능

###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혈액관리법」 제4조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추후반영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syyh2000@korea.kr

##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예천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장소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예천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군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을 홍보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과 헌혈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혈액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혈액관리법 시행령】

#### 제2조의3(헌혈의 권장)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